

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

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원하는 오피스텔 소유자께서는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**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거용 변동신고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변동(증·감액)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
■ 신청대상

- ① 오피스텔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**6.1.까지 전입신고**가 되어 있고
- ② **주거용**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❑ 사업장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변동신고 제외대상입니다.
 - ❑ 6월 1일 이전까지 임대주택 등록 물건은 신고 불필요

■ 주의사항

-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**기존주택이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**가 적용된 경우 이 건 변동신고로 인해 **1세대1주택 세율특례에서 제외**되어 **재산세가 증액**됨을 유의

■ 신청기간: 매년 6. 1. ~ 6. 15.

❑ 6월 2일 이후 취득자는 다음연도에 신고대상입니다.

■ 제출서류

- ① (공통)납세자 신분증 사본 (대리인 신고시: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)
- ② 소유자가 거주중인 경우: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
- ③ 임대(전·월세)중인 경우: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+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- ★ 소유자나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내부사진(호수사진, 안방, 거실, 주방 각1매) 등 추가서류가 필요

■ 신청방법

- 방문 / 우편 신청: 일산동구청 1층 세무과 주택재산팀
- 팩스 신청: ☎(031) 8075-9876
-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

❑ 이용방법:  ▶ 오른쪽 상단 돋보기 터치 ▶ '일산동구주택재산' 으로 검색 ▶ 일산동구주택재산 채널 추가 ▶ 채팅하기 터치 ▶ 서류보내기

변동신고서 간편 제출
카카오톡 채널 전송
아래 QR코드를 찍어 보세요



■ 문의: 고양시 민원콜센터 ☎(031) 909-9000